#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신성범·박정하·조은희

이만희 • 김승수 • 박대출

김종양 · 정희용 · 박준태

신동욱 • 유상범 • 조배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출입자의 나이 확인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제2호 중 "제62조제2호·제4호"를 "제62조제1항제2호·제4호"로 한다.

제94조제7호 중 "제62조제4호"를 "제6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95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62조제2호"를 "제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이후 제29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30조(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
|                    | 신분증 확인) 관람객을 입장시         |
|                    | 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
|                    |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
|                    | 위하여 출입자의 나이 확인에          |
|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
|                    |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
|                    |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
|                    |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         |
|                    |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       |
|                    | 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
|                    | 제한할 수 있다.                |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
| 등록취소) ① (생 략)      |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          |
|                    | <u>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u> |
|                    |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
|                    |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         |
|                    | 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
|                    |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
|                    |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
|                    |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
|                    |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         |

②·③ (생 략)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신 설>

제67조(행정처분 등) ①·② (생략)

<신 설>

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67조(행정처분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 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가 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제 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 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 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 ③ ~ ⑤ (생 략)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생 략)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 1. (생략)
- 2. <u>제62조제2호·제4호</u>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③ ~ ⑤ (생 략)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7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

| 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  |  |  |  |
|---|--|--|--|--|
| 있다.   |  |  |  |  |
|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제5 |  |  |  |  |
| 항까지와 같음)  |  |  |  |  |
| 제68조(과징금 부과) ① (현행과                             |  |  |  |  |
| 같음)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  |  |  |  |  |
| 1. (현행과 같음)                                     |  |  |  |  |
| 2. <u>제62조제1항제2호·제4호</u>                        |  |  |  |  |
|   |  |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  |
| 제94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  |  |
| 7. <u>제62조제1항제4호</u>                            |  |  |  |  |
|   |  |  |  |  |

육과광부렁ㅇ로 정하는 바에 따

| 디오물감상실, | 제한관람가비  |
|---------|---------|
| 디오물소극장  | 또는 복합영싱 |
| 물제공업소에  | 청소년 출입을 |
| 허용한 자   |         |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7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7. <u>제53조제3항</u>의 규정을 위반 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 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 8. 9. (생략)
  - 10. <u>제62조제2호</u>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지키지 아니한 자
  - 11. · 12. (생략)

| 제95조(벌칙)          |
|-------------------|
|                   |
|                   |
| <u>.</u>          |
| 1. ~ 6. (현행과 같음)  |
| 7. <u>제53조제4항</u> |
|                   |
|                   |
|                   |
| 8.•9. (현행과 같음)    |
| 10. 제62조제1항제2호    |
|                   |
|                   |
| 11.・12. (현행과 같음)  |